

COP29

탄소시장 합의: 기업의 기회와 대응 과제

December 2024 | Issue Brief



지난 11월 23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주요 규칙과 지침이 공식 채택됐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는 2015년 파리협정 채택 당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논의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제6조는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각국과 기업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도록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COP29에서는 장시간 협상 끝에 제6.2조와 제6.4조가 최종 합의됐습니다. 이 합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COP29 - Home](#)

파리협정 제6조 협상 역사

파리협정 제6조의 협상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 당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6조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각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6조는 크게 제6.2조: 국가 간 감축 실적(ITMOs) 거래에 대한 승인 및 취소 규칙 명확화와 제6.4조: UN 주도의 국제 탄소시장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구분됩니다.

6.2조 – 국가 간 감축 실적 거래에 대한 승인 및 취소 규칙

6.2조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서로 이전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각국은 서로 협력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 2015~2018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6.2조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과 절차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제 감축 실적의 인증과 거래 절차, 보고 체계 등이었습니다.
- 2018~2021년: 2018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COP24에서는 국가 간 감축 실적의 거래 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이 논의됐지만, 그 후 각국 의견이 엇갈리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감축 실적을 중복 계산하거나 불투명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2021~2023년: COP26에서는 6.2조의 세부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기 위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축 실적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등록부의 운영 방식, 보고 시스템의 일관성 확보 등이 주된 논의 과제였습니다.
- 2024년: COP29에서 최종적으로 감축 실적 거래에 대한 승인 절차, 보고서 불일치 처리 방안 등이 구체화됐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6.4조 – UN 주도의 글로벌 탄소시장 프레임워크 구축

6.4조는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배출권 거래시장, PACM)을 도입해 기존의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를 개선한 형태입니다. PACM은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5~2018년: CDM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CDM에서 발생했던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2019~2022년: 방법론 개발, 추가성 검증, 환경적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6.4조 감독위원회의 운영 규정과 사업의 전환 기준도 논의됐으며, 최초의 방법론 승인을 2025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24년(COP29): 최종적으로 감독위원회의 역할과 첫 번째 방법론 승인 절차가 확정됐으며, 기존 CDM 사업의 전환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 CDM 사업 주요 전환 일정

기존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도 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 평가를 포함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까지 전환 신청을 한 경우, 2025년 전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환된 프로젝트는 인증된 배출량(CERs)을 새로운 파리협정 체계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예상되는 탄소크레딧 양과 국내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의 활용 여부를 고려해 제6.4조 프로젝트로의 신규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CDM 프로젝트 참여자 사업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6.4조 프로젝트로 전환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사무국과 CDM 유치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새로운 제6.4조 프로젝트로의 신규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CDM 유치국이 감독기구에 해당 프로젝트의 6.4조 메커니즘 전환을 승인해주는 최종 기한입니다. 만약 2025년 말까지 승인받지 못하면 전환이 불가하며, 6.4조 프로젝트로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기업의 역할과 준비 사항

COP29에서는 제6조와 관련된 주요 합의들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기업이 국제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고, 국제탄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합의된 메커니즘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된 규정 준수 체계 구축

- CDM 프로젝트를 전환하지 않은 경우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 대응(전환 신청 및 전환 절차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새로운 국제탄소거래 규칙에 맞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 특히 국가 간 거래(ITMO) 참여 시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개발

- 낮은 배출권 가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책 마련 및 시장 참여자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기존 감축사업을 유지하거나 신규 감축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 사업 시행국에 대한 사전 정보 및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국제기구, 지역사회와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탄소거래 품질관리 및 탄소배출권 확보

- 더욱 엄격해진 모니터링, 보고, 검증 방법론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 그린워싱 및 더블카운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증된 배출권만 거래하는 등 프로젝트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탄소시장의 가격 변동성 및 정책 변화에 대비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COP 29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해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리스크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합니다.

Contacts

박 경상 Partner

kyoungsang.park@pwc.com

박 신정 Manager

shinjung.park@pwc.com

삼일회계법인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